

정 관



대한건설기계협회

Korea Construction Equipment Association

정 관

1994년	3월	31일	제정
1994년	8월	18일	개정
1995년	3월	9일	개정
1997년	5월	26일	개정
1998년	3월	11일	개정
1999년	3월	3일	개정
2000년	9월	2일	개정
2001년	3월	7일	개정
2002년	3월	12일	개정
2003년	3월	11일	개정
2005년	3월	10일	개정
2009년	3월	2일	개정
2010년	3월	30일	개정
2012년	3월	20일	개정
2015년	3월	31일	개정
2017년	3월	23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조직) 협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한다.

제3조(목적) 협회는 건설기계사업자의 품위보전, 권익옹호 및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동원태세 확립에 기여하며,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자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고 건설기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관리와 건설기계화 시공을 촉진키 위한 건설기계사업 관련 제반 제도의 개선은 물론 연구개발에 진력하며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건설기계사업 진흥을 촉진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업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에 시·도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3.31)

제5조(건의 및 자문) 협회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의 자문에 응한다.

제 2 장 사 업

제6조(사업) ①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사업과 특별사업으로 구분 시행한다.

1. 일반사업

- 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동원사무의 지원
- 나.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
- 다. 건설기계 기술에 관한 연구와 보급
- 라. 해외건설기계 기술에 관한 정보도입 및 보급
- 마. 회원의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련 법령·제도·시책 등에 관한 대정부 건의 및 자문
- 바.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 및 단속
- 사. 업종별 상호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조정
- 아. 회원의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지도 업무(신설 2010.3.30)
- 자.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 운영(신설 2015.3.31)

2. 특별사업

- 가. 건설기계공제조합
- 나. 건설기계조종사 교육훈련(개정 2010.3.30)
- 다.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연구 및 학술용역
- 라. 신문의 발행과 회보·회지 등 정기·부정기 간행물 발간(개정 2010.3.30)
- 마. 건설기계 기술정보의 전산관리
- 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 사. <삭 제> (2010.3.30)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부대사업

② 위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특별사업 중 공제조합 운영을 위하여 공제사업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0.)

제 3 장 회 원

제7조(회원)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8조에 의한 회원가입을 마친 자로 한다.(개정 2010.3.30)
2. 특별회원은 건설기계관련단체, 건설기계관련업체(정비업체, 제작 및 판매업체, 부품생산 및 부품판매업체 등) 자가용 건설기계 보유업체 및 건설기계 업무와 관련한 학술단체 또는 기타 특별회원이 되고자 가입을 신청한 자로서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회원가입 등) ① 건설기계사업자로서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3.30)

②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3.30)

③ 협회는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관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와 특별회원은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단서개정 2010.3.30)

1.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 향유하는 권리
2. 협회의 임원, 대의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2. 건설기계사업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3. 회비의 납부 의무
4.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제11조(자격정지)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삭제> (2001.3.7)
2.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 권리행사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3.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되는 직위에 있는 자는 전항 제2호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11조의2(임원 등의 지위보전) ① 정관 및 제 규정에 의거 선출직 임원 등의 회원이 정기총회 전까지 정관 제10조 제3호에 의한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는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쳐 그 직을 해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및 감사
2. 윤리위원
3. 시·도회 회장 및 운영위원(개정 2015.3.31)
4. 기종별협의회 회장(신설 2015.3.31)

③ 제1항에 의한 회비납부기준은 정기총회 시 대의원 선정기준으로 정한 전년도 회비납부 실적을 적용한다.(전문신설 2001.3.7)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건설기계대여업을 폐지하였을 때
2.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서 제명된 때
3. 회원이 퇴회를 신청하였을 때 (개정 2017.3.23)
4. 보유하고 있던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등으로 제7조에 따른 회원자격이 없는 경우 (신설 2017.3.23)

제 4 장 임원 및 자문기구

제13조(임원) 협회 임원으로 회장 1인(비상임), 이사 39인 이내(상임 2인, 비상임 37인 이내)로 하며, 이사 중 수석부회장 1인, 비상임 부회장 6인, 상임 부회장 1인을 두고, 감사 3인(상임 1인, 비상임 2인)을 둔다.

(개정 2010.3.30)(개정 2015.3.31)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단, 회장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0)

② 수석부회장 1인과 비상임 부회장 6인은 회원이사 중에서, 상임부회장 1인은 비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각각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3.30)(개정 2015.3.31.)

③ 비 상임이사 37인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 2인은 비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비 상임이사 선출은 총회에서 회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0.3.30.)(개정 2015.3.31.)(개정 2017.3.23)

④ 감사 3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비상임 감사 2인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상임감사 1인은 비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상임감사는 제6조 제1항의 특별사업 중 공제조합을 설립한 이후 건설기계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비회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0.3.30)

제14조의 2(피선거권 및 제한사항) ① 정관 제14조 제1항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 는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협회 회원으로 있는 자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정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정관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3.30)
5. 징계사유로 입후보자가 후보등록일 현재 협회 징계심의 의결기구에 계류 중인 자
6. 후보등록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산하기구 포함)의 임원으로 재임 중에 있는 자(신설 2010.3.30)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기구를 통할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개정 2010.3.30)

④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상임부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명을 받아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30)

⑤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비상임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상임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0.3.30)

② 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차기총회에서 보선하며, 그 외 임원의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3.30)

③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임원의 경우에는 새로 임기를 시작하며, 보선된 회장의 경우 그 잔임 기간이 2분의 1 미만이고 다음총회에서 재 선출되었을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0.3.30)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0.3.30)

⑤ <삭제> (2010.3.30)

제17조(명예회장 및 고문 등) ① 협회에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퇴임한 직전의 회장에 대하여는 명예회장으로 위촉한다.

③ 고문은 회원 중 퇴임이사 또는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8조(임원 및 고문의 보수 등) ① 회장 및 임원으로서 상임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또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임하는 임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회 의

제19조(회의) ① 협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3.30)

③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결의로서 요구할 때
 2. 재적 대의원 2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0.3.30)
- ③ 총회의 의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서 갈음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04.3.10)
- ⑤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0.3.30)

제21조(대의원) ① 총회를 구성할 대의원은 200인 이내로 한다.

- ② 대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각 시·도회별로 선출하되, 일반건설기계대여업체, 개별건설기계대여업체 및 연명등록자가 안배 되도록 선출하며, 구성비율과 각 시·도별 배정인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10.3.30)(개정 2015.3.31)
- ③ 대의원은 각 시·도회의 배정 인원수 내에서 당연직 대의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3.30)(개정 2015.3.31)
- ④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2010.3.30)
- ⑤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개정
 2. 사업계획과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 및 윤리위원의 선출(개정 2010.3.30)
 4. 총회선출 임원의 불신임과 상임임원의 해임건의
 5. 이사회의 의결로 제안하는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과 예산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0)

제23조(총회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단, 표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단서신설 2010.3.30.)(개정 2017.3.23)

② 회장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단독후보 인 경우에도 같다) 다만, 2인 이상이 입후보하여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를 한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0.3.30) (개정 2017.3.23)

③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결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의원은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시킬 수 없다. (신설 2017.3.23)

제2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0.3.30)

2.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개정 2010.3.30)

② 이사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발송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3.30)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안 및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안

4. 일시 차입 및 기채에 관한 사항

5.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개정 2010.3.30)

6. 회원의 포상자 결정 및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7.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사항

8.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회원의 복리에 관한 사항

10. 고문·자문위원 및 제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1.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단, 표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단서신설 2010.3.30)

② 의안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도회 회장 및 제 위원회 위원장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3.30)(개정 2015.3.31)

제27조(의장)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28조(회의록) 의장은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3.30.)

제 6 장 위원회 및 시·도회장 회의

제29조(윤리위원회) ① 건설기계사업자의 품위보전과 사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 한다.

③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8인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1인은 상임이사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단서신설 2010.3.30)

④ 위원회는 회원의 포상, 징계, 기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제 위원회) ①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건설기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기관 및 학계와 회원 중에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 각항의 규정을 제외 하고는 제29조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1조(회장단 회의) ① 협회에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회의를 둔다.

② 회장단 회의는 협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0.3.30)

제32조(시·도회 회장 회의) ① 협회에 시·도회 회장으로 구성되는 시·도회 회장 회의를 둔다.

② 시·도회 회장 회의는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시·도회 회장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5.3.31)

제 7 장 기종별협의회

제33조(기종협의회) <삭제> (2012.3.20)

제33조의2(기종별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협회에 각 건설기계 기종별 회원으로 구성되는 기종별협회를 둔다.

② 기종별협회는 건설기계 각 기종별 대여사업진흥 및 기종별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기종별협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31)

제34조(협회의 운영) <삭제> (2012.3.20.)

제 8 장 사무기구

제35조(사무기구)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협회에 임원에 준하는 별정직을 둘 수 있으며, 사무기구의 직제 및 정원, 직원의 임·면과 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급여) 상임임원 및 직원의 급료, 수당, 상여, 퇴직금 및 사망급여금, 근로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시·도회

제37조(시·도회) ① 협회는 각 시·도에 시·도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시·도회는 당해 시·도회에 소속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시·도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운영위원 7인~20인 이내
4. 감사 1인

③ 시·도회의 임원은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④ 시·도회 회장 및 시·도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시·도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시·도회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항 제3호 운영위원 정수에 포함되며 운영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⑥ 시·도회 회장은 시·도회를 대표하고 시·도회 업무를 처리하며 시·도회 부회장은 시·도회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⑦ 시·도회의 운영위원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도회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감사는 업무 및 경리를 감사한다.
 - ⑧ 시·도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⑨ 시·도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본조개정 2015.3.31)

제 10 장 자산 및 회계

제38조(자산) ①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자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2. 회비
3. 사업에 따른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기타 수입

② 협회는 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 년도 결산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경비) ① 협회의 경비는 회비, 수수료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매 회계년도의 결산잉여금은 제 적립금을 제외 하고는 익년도로 이월한다.

제40조(회계 및 회계년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때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로 한다.

제41조(회비) ① 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일반회비라 함은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서 입회비와 기본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라 함은 예기치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개정 2010.3.30)

- ② 입회비는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부과하며, 입회비의 금액과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3.30)
- ③ 회원의 기본회비는 년1회 부과하며, 그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개정 2010.3.30)
- ④ 회원의 회비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3.30)
- ⑤ <삭제> (2010.3.30)

제42조(세입) ① 본회의 수입은 입회비와 기본회비, 수수료,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본회의 수입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3조(수수료) 협회는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추천, 전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예산) ① 회장은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당해 시·도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3.31)

제45조(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실적보고서
2. 세입·세출 결산서

②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회의 결산은 당해 시·도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3.31)
 ④ 회장은 각 시·도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 및 재산현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3.31)

제46조(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포상 및 징계

제47조(포상) 회장은 건설기계업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또는 협회사업에 공헌한 회원 등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48조(회원의 징계 및 보고)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건설기계사업자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거나 건설기계사업 윤리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인하여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위반사실이 건설기계업계의 위신을 심히 실추시킨 경우
 3. 건설기계 위탁관리에 있어 민원을 야기 시킨 자로서 그 위반 사실이 건설기계업계의 위신을 심히 실추시킨 경우
 4. 회원으로서 각종 자료의 제출, 보고의 이행과 조회 응답의무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처분
 2. 2년 이하의 회원 권리행사 정지처분
 3. 건설기계업계에 대한 공개 계고
 4. 당사자에 대한 계고
- ③ 회장은 권리행사 정지처분 또는 건설기계업계에 대한 공개 계고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협회가 발행하는 회보지에 1회 이상 그 징계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④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 장 정관의 변경

제49조(정관의 변경)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로서 요구할 때
 2. 재적 대의원 2분의 1이상 연서로 요구할 때
- ② 정관변경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장 해 산

제50조(해산과 청산) ① 협회는 주무부장관의 명령 또는 총회 결의로서 해산한다.

② 본 협회의 해산 시 회장은 청산인이 되며, 청산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청산인을 둘 수 있다.

제 14 장 보 칙

제51조(제 규정) ①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정관과 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발기인 및 창립) ①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만들고 발기인 전원이 이 정관 말미에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명날인 한다.

②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3조(준용)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시행 이전에 협회설립 발기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사단법인 대한중기협회의 정회원 중 중기대여업체 회원은 설립되는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종합 및 단종업체 회원으로 각각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사단법인 대한중기협회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계검사대행업무와 협회의 재산·회비 등 제반 권리 및 의무는 설립된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이전승계 되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사단법인 대한중기협회 산하 각 시·도 지회에 대한 재산과 제반 권리 및 의무는 설립된 대한건설기계협회 각 시·도 지회에 이전승계 되는 것으로 본다.

⑤ 사단법인 대한중기협회는 이 정관에 의한 “대한건설기계협회”의 법인설립 등기를 필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발기인은 본 협회의 설립등기 완료 시까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며 발기인 대표자로 구성된 발기인 대표자 회의에서 정관 및 발기문을 작성한다.

발기인은 대한건설기계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날인하며 정관 원본에 대한 간인은 아래 발기인의 대표자 9인으로 한다.

1994년 3월 31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검사대행업무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관[건기58182-18('98.1.20)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취소]됨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업무의 이관과 함께 검사업무 종사 인력자원 및 재산 등에 관한 제반 권리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전 승계한다.

② 정관 제14조 제4항에 의한 상임감사 선출은 제3조의 공제조합을 설립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개정 후에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정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 임원(회장,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2003년 3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